

「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세채 의원 외 16인

2. 제안이유

-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정의(안 제2조)
- 공동이용시설의 종류(안 제3조)
-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(안 제4조)
-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(안 제7조)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30조의2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, 제10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6호1)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을 통해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공동이용시설임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정확성 및 명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1) 제3조(공동이용시설의 종류)

“놀이터, 마을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”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놀이터, 마을회관,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
2.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·세탁장 등 공동작업장, 화장실 및 수도
3. 어린이집·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
4. 마을방송국·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
5. 마을기업·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- 안 제4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, “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²⁾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.”로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별 상황에 따른 운영 방식의 채택으로 효율적·효과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7조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행정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지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2)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<2항 이하 생략>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- 안 제8조에서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의2제1항3)에 따라 “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”를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같은 법 제30조의2제2항4)에 따라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과 “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”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3) 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
2.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

4) 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

-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